

목포시 건축물의 허가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
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

제 출 자 : 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제정된 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사용자 중심의 사전점검이 필수적이라 보여지며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함

2. 조례안(주민청원)의 주요골자

가. (안) 제3조(사전점검대상)

- ① 국가와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모두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
- ② 법15조 및 동법시행령7조에 의하여 기준완화할 경우 사전점검 실시

나. (안) 제4조(사전점검요원의 위촉 및 임기)

- ①시장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, 시민단체, 학계의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한다.
- ②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③점검요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다. (안) 제6조(목포시의 임무)

- ①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사전점검 취지고지, 사전점검 협력토록 지도
- ②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

라. (안) 제8조(사전점검 보고서의 작성)

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요원의 2/3이상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목포시에 제출

마. (안) 제9조(사전점검 결과의 반영)

- ①목포시는 보고서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이를 반영함.
- ②목포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 요원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3. 제정조례안 : 별첨 1

4. 신문구조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: 별첨 2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시행령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시행규칙
-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
6. 관련부서 의견

가. 목포시 종합의견 : 별첨 3

나. 허가과, 기획예산과, 사회복지과 의견 : 별첨 4

7. 예산상황 : 점검요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.

8. 입법예고기간 : 해당없음

9. 사전협의사항

- 보건복지부, 서울특별시, 건설교통부 : 별첨 5

10.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
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(이하 '법'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(이하 '편의시설'이라 한다)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,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'사전 점검'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제2조와 같다.

제3조(사전 점검 대상)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모두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,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.

②법제15조및법시행령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.

제4조(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) ① 시장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, 학계의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인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(이하 '점검요원'이라 한다)을 위촉한다.

②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

③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점검요원에게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사전점검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점검요원의 의무)①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.

②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목포시의 의무)①허가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 해야한다.

③모니터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④허가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건축물 시설주의 의무)①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주는 사전점검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해야 한다.

제8조(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)①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/3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 보고서(별표1호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)①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허가와 시공및 사용승인에 이를 반영한다.

②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들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 1 호 서식]

건축허가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만이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,

-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(안)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제2항에 “시설주는 사전점검결과를 성실하게 반영해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9조 제1항에 “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이를 반영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어,
- 그 점검요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등 편의시설의 시설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시설 주관기관이 그 점검결과에 기속을 받는 내용으로 주민의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위법성 논란이 예상되므로 조례제정은 불가 하다고 판단됨.

□ 목포시 관련 부서의견

1) 허가과

- 장애인편의시설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허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의한 설치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, 건축법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에 저촉 및 적법성 여부 대해서는 귀과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임

2) 기획예산과
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”고 규정되어 있음.
-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(안)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위법성의 논란이 예상될 소지가 있는 바,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도·감독관은 시설주관기관(목포시청)이나 그의 지시에 의한 소속공무원만이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므로
- 동 조례안에 의해 위촉된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토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 (목포시청)이 참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것이라면

법률의 위임이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

- 그 점검요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으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거나 시설주관기관 (목포시청)이 그 점검결과에 기속을 받는 내용의 것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하겠음.

3) 사회복지과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에 관한 편의증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과에서는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청구안을 2003. 5. 23일 접수 되어
- 그동안 관련기관 등의 자문 및 협의하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
- 타기관(보건복지부.서울시등)의견을 종합하면 상위법인 건축법의 규정에 반하여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의견이며
- 우리시기획예산과(법무)에서도변호사협회등 다각적으로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,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의 별칙을 정한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
-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있어 향후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다분이라고 보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것입니다
- 그리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이번 주민 청구조례 제정 요구를 전국자치단체등 유일하게 우리시가 처음 접한 행정사항인 만큼 논란의 대상인 위법성 문제가 해결 된 후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사항으로 이번 조례제정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.

□ 타기관 의견 (사전협의 사항)

1) 보건복지부 (재활지원과)

- 건축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건축사만이 건축허가, 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,검사,확인업무를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고
-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에 위임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조례제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임.

2) 서울특별시 (장애인복지과 박형태)

-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가 건축물의 허가, 시공 및 사용승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또한 상위법인 건축법에 사전점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·군·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없다는 의견
- 또한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(23호서식)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(24호서식)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 항목을 추가하려고 3회에 걸쳐 건의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함.

3) 건설교통부 (조한권)

- 현행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 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의하여 확인업무가능한것입니다. 조례의제정은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 것 입니다